

#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?

<b>적용대상</b>	- 건설폐기물 : '건설산업기본법'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5톤 이상 발생한 폐기물
<b>건설폐기물의 종류</b>	- 폐콘크리트, 페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기와 - 폐목재, 폐금속류, 폐유리 -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 - 건설폐토석 (흙, 모래, 자갈 등으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) - 건설오니 (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말함) - 혼합건설폐기물
<b>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</b>	-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- 건설공사용 순환골재 (콘크리트용, 콘크리트제품용, 도메우기 및 뒷채움용) 등
<b>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</b>	- 적용대상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공사 (단, 2005.01.01 이후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) ① 도로법에 의한 4km 이상 도로의 신설 및 확장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1km 이상 ③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및 확장 ④ 15만㎡ 이상의 용지조성사업 ⑤ 하수종말·분뇨·폐수종말 처리시설
<b>건설폐기물 처리시설</b>	- 파쇄, 분쇄시설 - 탈수, 건조시설 (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%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함)
<b>발주자의 의무</b>	-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, 보관,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고,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함
<b>배출자의 의무</b>	- 건설폐기물을 성상별,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함
<b>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</b>	-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,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·운반·보관해야 함 ※현장 내 최소 2개 이상의 분리보관소 설치 요구됨.
<b>건설폐기물의 수집·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</b>	-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함. (2005.07.18 시행)
<b>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발주</b>	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해야 함. (2006.12.31까지 500톤 이상으로 적용) -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발생량에서 제외. -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.
<b>배출자의 신고 등</b>	- 신고대상 : 건설공사 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해당)로 인하여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이상 폐기물 배출 시 - 변경신고 대상 · 발생량이 신고한 총배출량 보다 50%이상 증가 시 ·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, 처리업체 등 처리계획 변경 시 · 신고한 건설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의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· 공사기간 3개월 이상 연장 시 ※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경우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. ※최초 신고 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변경되거나, 추가된 현장은 변경신고가 요구됨.
<b>재활용 실적관리 및 제출</b>	-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관할관청에 제출
<b>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</b>	- 모두 승인대상 (건설공사의 경우) ※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경우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
# 우리나라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과 안전대책은?

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대상을 3층이상,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확대 ('05 상반기 시행)하고,고속철도, 항공기 운행 및 장대교량, 터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지진응답계측장비 과학화, 비상정지, 교통차단 등 지진대응시스템 개발, 모의지진 대용량 모사실험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정부의 R&D 사업으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.

## 1. 내진설계기준 적용현황

- 홍성지진('78) 이후 댐('79부터), 터널('85), 건축물('88), 고속철도('91), 교량('92)등 10종의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
- '95 고베지진 이후 지하철,공항,수문 등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내진기준도 상향 조정 (지진규모 4.5~5 → 5~7)
- 현행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(제정년도 : 적용규모)

구 분	설계기준	구 분	설계기준
댐	79년 : 5.4~6.2	터 널	85년 : 5.7~6.4
건축물	88년 : 5.5~6.5	철 도	91년 : 5.7~6.4
고속철도	91년 : 5.5~7.0	교 량	92년 : 5.7~6.3
수 문	00년 : 5.7~6.1	지중구조물	00년 : 5.5~6.0
공 항	04년 : 5.5~6.0	지하철	05년 예정 : 5.7~6.3

## 2. 내진설계 및 미적용 시설물 보강대책

- 고속철도 노선과 댐 (23개)은 모두 내진설계 적용
- 지하철 22개 노선 중 서울 9호선, 광주 1호선 등 6개 노선 적용  
- '05년부터 내진설계적용, 미적용 16개 지하철 노선은 내진평가 착수
- 교량,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 11,263개소 중 7,115개소 (63%) 적용  
- 교량 9,221개소 중 6,931개소 (75%)는 내진설계 반영  
- 도로터널은 굴착식 공법으로 건설되어 내진성능 확보 (377개소)  
- 철도터널 중 보강이 필요한 개착식, 기동식 터널 (187개소)은 보강이 완료된 22개소를 제외하고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단계적 추진 (165개소)
- 6층 이상 건축물 97,784동 중 35,442동 (36%)은 적용  
- 풍하중을 감안한 설계가 되어있어 미적용 건축물도 내진성능 보유 (규모 4~5 정도)  
- 재건축시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으며, 리모델링 관련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하고 경제적인 내진성능 향상기술과 공법 등을 마련, 보강 권장('05)

